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. 9. 20 선고 2018가단384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9. 2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안성시 C 대 924㎡ 중 별지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ㅁ, ㅂ, ㅅ, ㅇ, ㅈ, ㅊ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"가" 부분 55㎡ 지상의 시멘트블록조 스테트지붕 건물을 철거하고 위 "가"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송현직

별지